

EU 11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EU 농산물 수출입 감소

- 출처 : 유럽위원회(2018.12.03.)

(https://ec.europa.eu/info/news/slowdown-eu-exports-while-imports-brazil-and-usa-increased-2018-dec-03_en)

- 유럽위원회 월간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 농산물 수출액은 110억 유로, 수입액은 87억 유로로써 전년 동기대비 각각 6.1%, 0.9% 감소함
- 수출 부문 중 가장 큰 감소를 나타내는 식품군은 ① 육류로써 7,700만 유로, ② 밀 및 ③기타 곡물류 또한 각각 5,800만 유로와 6,000만 유로의 감소를 나타냄
- 2018년도 9월, EU가 농산물 수출 증가를 나타낸 수출 대상국은 ① 이집트(6,100만 €), ② 알제리(3,400만 €), ③ 한국(2,600만 €)이 있음
- 또한, 수출 증가를 나타낸 품목으로는 ① 와인(5천7백만 유로), ② 설탕(5천6백만 유로), ③ 기타 주류(3천5백만 유로)가 있음
- 한편, 브라질,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전년도 동기대비 각각 1억 6,600만 유로, 1억 400만 유로의 증가를 나타냄
- 주요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, 물 부문이 2억 2,400만 유로, 제빵류가 8,000만 유로의 증가를 나타냄

2. 농약잔류물 위험으로 인한 특정 식품 수입 관련 법 개정

- 출처:EUR-Lex(2018.11.08)

(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qid=1538669452962&uri=CELEX:32018R1660>)

- 유럽연합은 농약 잔류물 오염 위험과 관련하여 특정 제 3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비동물성 식품에 관한 규정 Regulation(EU) 885/2014의 일부내용을 폐지하고, Regulation(EC) 669/2009의 내용을 수정함
 -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Regulation(EC) 669/2009 붙임 I이 있음. 유럽연합은

- 해당 문서 붙임 1에 열거된 비동물성 원산지에 관한 공식 통제를 강화함.
- ① 터키산 포도나무 잎과 ② 베트남산 용과(드래곤 프루트 혹은 피타야라고도 불림), ③ 인도산 카레잎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통제가 강화됨
- 터키산 포도나무 잎의 농약 최대 잔류농도 수준은 지속적으로 준수되고 있지 않으며 통관 통제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
 - 베트남산 용과 또한 비준수 빈도가 높음. 2017년 3월 베트남 對 EU수출 식품 살충제 관리 검사 결과 유럽에 수출되는 식품에 대한 효과적인 살충제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
 - 터키산 포도나무 잎과 베트남산 용과의 수입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치로 해결할 수 없음에 따라 관련 수입에 대한 특별 조건이 수립되어야 함
 - 현재 인도산 카레 잎은 Regulation(EU) 885/2014에 명시되어있는 특수 수입 조건이 적용되고 있으나, Regulation(EC) 669/2009에 추가되어 규제가 관리될 예정임
 - 수정된 규정에 따르면, 인도산 카레 잎, 베트남산 용과, 터키산 포도나무 잎은 유럽 수출 이전에 샘플링 분석 등 관련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공식 통제를 받아야하며 수출시 Commission Directive 2002/63/EC(6)에 따른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. 해당 위생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4개월 동안 유효함
 - 해당식품의 농약 잔류물에 관한 규정은 Regulation(EC) 669/2009에 제시된 관리 절차를 따라야 하며, 해당 농약최대잔류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통관 거부 조치될 수 있음
 - 또한, 지속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,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식품에 관련한 ‘공식 분석 및 통제 결과에 관한 보고서’가 2년에 한 번씩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. 관련 수출업자는 무역 통제 및 전문시스템(TRACE)에 관련 문서 등록해야 함
 - 이 규정은 2018년 12월 8일에 유럽연합관보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며, 공표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함
 - 해당 일자 이전의 수입절차는 Regulation(EC) 669/2009과 Regulation(EU) 885/2014의 요건을 따름
 - 수정된 유럽 연합 규정 Regulation(EC) 669/2009의 붙임 I 내용

식품	CN 코드	TARIC	원산지	검사빈도	위해성
용과	ex 0810 9020	10	베트남	10%	Regulation(EC)396/2005에 따라 적용된 통제목록 농약 잔류물, 디씨오카바메이트 잔류물 등

카레 잎	ex 1211 9086	10	인도	20%	Regulation(EC)396/2005에 따라 적용된 통제목록 농약 잔류물, 아세페이트 잔류물
포도 잎	ex 2008 9999	11, 19	터키	20%	Regulation(EC)396/2005에 따라 적용된 통제목록 농약 잔류물, 디씨오카바메이트 잔류물 등

3. 불가리아 돼지 열병 감염 관련 조치

- 출처 : EUR-Lex(2018.11.12.)

(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qid=1538669452962&uri=CELEX:32018D1698>)

-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돼지 농장의 수익과 EU 내 무역 및 기타국가간의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
- 야생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돼지 개체군으로 전염될 위험이 있음
- 유럽의회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통제를 위해 유럽의회 지침 Council Directive 2002/60/EC(3)에 따라 EU 내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실행함
- 불가리아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상황에 대해 유럽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지역 설정 및 구제역 조치를 취함
 - 이는 해당식품의 EU 내 무역 뿐 아니라 제 3국 수출로 인해 부과되는 부담한 무역장벽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
- 이에 따라 불가리아의 감염지역은 해당 규정의 붙임에 추가되어야하며, 관찰시간은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2/60/EC에 따라 질병 역학 을 고려 하여 설정됨
- 해당 결정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을 발함
-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2/60/EC의 붙임내용

불가리아 내 돼지열병 감염 지역
도브리치 지역
① 카바르나 지자체 내 : Balgarevo, Kavarna, Sveti Nikola, Kamen Bryag, Hadzhi Dimitar, Poruchik Chunchevo
② 샤프라 지자체 내 Gorun, Tiulenovo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- 없음

III

통관문제 사례·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발생일자	통관번호	HS code	상품명(제조사)	중량(kg)	불합격사유	조치사항
2018.11.16	2018.33327	0712391050	팽이버섯	25kg	균 발견 (리스테리아균)	소비자리콜

- 리스테리아균 감염 시 고열, 두통, 구토, 복통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며 영유아나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임. 특히 임산부는 감염 시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 - 유럽연합은 유럽식품안전청(EFSA,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)과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(ECDC,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)의 권고에 따라, 리스토리아균에 감염된 식품을 철회하고 회수하고 있음¹⁾

※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1) 유럽식품안전청 2018.03.22